

운 영 규 정 개 요

베셀재가복지센터

급여종류 - 방문요양

전 화 번 호 02 2601 0056

정

원

정함이 없음

【 운영목적 】

"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께 신체활동지원, 가사지원, 일상생활지원, 정서지원,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서비스 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, 직원의 안정적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【 급여계약 】

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관 범위

【 계약변경 】

- 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.
- 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.
- ☐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.
- ☐ 수급자의 상태 변화로 서비스 시간을 추가하거나 감소해야 하는 경우.
- ☐ 그 외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

【 계약해지】

- ☐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.
- ☐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.
- ☐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
- ☐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,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.
- ☐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판정된 경우
- ☐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☐ 기타 센터와 계약당사자와 합의할 경우"

【 신원인수인의 권 리】

- ☐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
- ☐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☐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
- ☐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

☐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"

【 신원인수인의 의무 】

- ☐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납부의 의무
- ☐ 서비스전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.
- ☐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.
- ☐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“기관”에 통보의무.
- ☐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.
- ☐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."

【 배상책임보험 】

한국사회복지(전문인배상책임보험) 가입

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은

운영규정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